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0가단23005 손해배상
원고(선정당사자)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12. 11. 21.
판 결 선 고 2013. 9. 11.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①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22,000,000원 및 그 중 15,000,000원에 대하여 2006. 7. 4.부터, 그 중 7,000,000원에 대하여 2007. 2. 2.부터 각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② 선정자 C에게 4,000,000원, 선정자 D에게 4,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06. 7. 4.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E 및 피고에 대한 형사 판결 확정 경위

1) 원고는 E의 남편이고, 선정자 C, D은 원고와 E의 자녀들이다.

2) 피고는 E와의 간통 및 E에 대한 폭행·명예훼손 공소사실로, E는 피고와의 상간 공소사실로 각 기소되었는데, 1심 법원은 피고와 E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E에게 징역 8월의 실형, 피고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하였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7. 11. 21. 선고 2006고단2432, 2007고단2315 판결). 1심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은 아래와 같다.

[피고]

• 간통

피고는 ① 2006. 1. 중순에서 하순 사이 시간불상경 안산시 단원구 F 소재 G모텔 불상 호실에서 E와 1회 성교하고, ② 2006. 2. 초순에서 중순 사이 시간불상경 안산시 상록구 H 소재 I모텔 불상 호실에서 E와 1회 성교하고, ③ 2006. 3. 초순에서 중순 사이 14:00경 안산시 단원구 J 소재 K모텔 불상 호실에서 E와 1회 성교하여, 각 간통하였다.

• 명예훼손

피고는 ① 2005. 12. 19.경 안산시 단원구 L 소재 E 운영의 M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N이 듣고 있는 가운데 E에게 "너는 아무 남자하고 연애를 한다."라고 말하고, ② 2005. 12. 20.경 위 M공인중개사 사무실 뒤편에서 위 N이 듣고 있는 가운데 E에게 "나를 꼬드겨 4억 원을 가로챘고 너는 아무 남자하고 연애를

한다."라고 말하고, ③ 2006. 4. 17.경 위 M공인중개사 사무실 옆 과일가게 앞에서 O에게 "E는 과부년이라 몸을 팔아먹고 사는 과부년이고, E의 사무실에 나를 꼬셔 연애를 100번도 더했다."라고 말하고, ④ 2006. 7. 13.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P, Q, R이 듣고 있는 가운데 E에 대하여 "과부년이라 얼마나 보지를 잘 파는지 모른다, 꽃뱀이라 남자들을 꼬셔 골프를 치러 다닌다."라고 말하여, 각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 폭행

피고는 2006. 4. 일자 불상경 위 M공인중개사 사무실 앞 노상에서 S, T, R이 보고 있는 가운데 E와 다투던 중, "돈을 내놓아라, 이 사무실은 내가 애인이어서 차려준 것이다, 이 과부년아, 너 보지 팔아먹고 사는 년"이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E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흔들며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E]

- 상간

E는 피고가 배우자 있는 자라는 사실을 알면서 위와 같이 피고와 3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3) 이에 대해 E는 "피고와 간음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는 2005년 하반기부터 E로부터 받을 돈 1억 7,000만 원을 받지 못하여 E와 사이가 좋지 않았는바 피고와 그의 처 U은 E를 음해할 목적으로 간통 고소에 이른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위 판결에 대해 항소하였으나(피고는 항소하지 않아 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항소심 법원은 E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고, 다만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E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08. 12. 23. 선고 2007노5033 판

결).

4) E는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664 판결) 위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의 명예훼손 관련 약식명령 확정 경위

1) 피고는 "E 및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선정자 D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안감을 유발하게 하는 말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라는 공소사실로 약식 기소되어 2007. 5. 2.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7고약9818), 피고가 2007. 6. 21.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함으로써 위 약식명령은 확정되었다.

2) 위 약식명령에서 인정된 범죄사실은 아래와 같다.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 글,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 ① 2006. 12. 15. 21:00경 안산시 상록구 V, 206호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원고의 일반전화로 전화하여 선정자 D이 받자, "나, 네 엄마 애인이다. 네 엄마 맨날 남자 바꾸어 가면서 바람피는데 아주 나쁜 년이다"라고 말하고,
- ② 2007. 2. 2.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선정자 D이 전화를 받자 "너 엄마 A 자지 안 선다고 한 거 밖에 그 이유가 없지, 여보세요? 말해봐. 정말 좋게 풀리면"이라고 말하고,
- ③ 같은 날(2007. 2. 2.) 같은 방법으로 "여보세요? 뭔지 모르겠는데, E씨 내 통

장에서 500씩 이 돈까지 찾아간 여자가 E인데, 나하고 살고 싶어서 A 자지 안 선다고 그렇게 성불구라면서 내 통장에서 500씩이나 저, 찾아간 여자야, E가. 확인해 봐."라고 말하고,

- ④ 같은 날(2007. 2. 2.) 같은 방법으로 "D아, D아 네 엄마는 아주 나쁜 년이다. 네 아버지 A는 죽어야지 왜 사느냐고 하고, 네 아버지 A는 성불구자 병신이면서 죽지도 않고 왜 사느냐, D아 A 자지가 크냐? 작으냐? 어떻게 생겼냐?"라고 말하여,

각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안감을 유발하게 하는 말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 명예훼손

피고는 2006. 7. 13. 18:00경 위 M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E가 피고의 친구들에게 헛소문을 퍼뜨렸다는 이유로 "저년 개보지야. 저년 신랑은 자지가 안 서서 아무 남자하고 연애를 한다. 야 이년아 신랑 자지도 안 서는데 너를 데리고 사느냐, 신랑은 못 해 주니까 걸레년이다. 이놈 저놈한테 대 준다. 내가 애인이다."라고 말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의 주장¹⁾

- 1) E는 피고와 간음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피고는 처 U과 공모하여 E가 피고

1) 2012. 10. 17. 열린 변론기일에서 원고가 구술로 정리한 청구원인에 따른다.

와 간음하였다는 허위 사실을 조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 E와 간음하였다고 허위로 자백하였다. 이로 인해 아무런 죄가 없는 E가 1심 법원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100일이 넘도록 수형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E에 대한 억울한 유죄 판결 및 수형 생활로 인해 E의 남편인 원고 및 자녀들인 선정자들은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이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2) 또한 피고는 E 및 원고와 관련된 상스럽고 추잡한 허위 사실²⁾을 공연히 적시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위자료를 원고에게 지급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E가 피고와 간음을 한 것은 사실이고, 이와 관련하여 E와 피고의 간음 사실을 인정한 형사 판결도 확정된 바 있다. 따라서 E가 피고와 간음을 하지 않았음에도 피고가 거짓 자백을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 및 선정자들의 위자료 청구는 부당하다.

2) 피고의 명예훼손적 언사는 원고가 아니라 E 내지 선정자들을 상대로 이루어진 것이었으므로 이로 인해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다. 설사 피고의 언사로 원고의 명예가 훼손된 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

3. 판 단

가. 허위 간통 조작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

2) 원고는 피고의 명예훼손적 언사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으나, 피고가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받은 판결문 및 약식명령을 원고가 증거(갑 제1, 3호증)로 제출하였으므로 거기에 적시된 명예훼손적 언사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것으로 청구원인을 선택한다.

1) E가 피고와 3회 간음함으로써 각 상간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한 형사 판결이 확정된 바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원고가 제기하는 의혹만으로는 위 형사 확정 판결의 결론을 뒤집고 E가 피고와 간음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따라서 E가 피고와 간음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 및 선정자들의 이 부분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

1) 피고가 원고 및 E와 관련된 상스러운 언사를 위 기초사실 기재와 같이 수차례에 걸쳐서 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이러한 피고의 언사는 2005. 12. 19.부터 2007. 2. 2.경까지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고는 각 해당 일시 무렵에 명예훼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및 가해자(피고)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의 마지막 언사가 이루어진 2007. 2. 2.부터도 3년이 지난 2010. 6. 18. 비로소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설사 피고의 언사로 인해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시효로 인하여 이미 소멸하였다(민법 제766조 제1항).

3) 한편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는 2008. 8. 15. 16:16경부터 같은 날 19:30경까지 안산시 사동 소재 상호 불상 고기집에서 W과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E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너하고 고종사촌 다 알아. 고종사촌이 W이다. W이가 옛날에 우리 목수야. 너 아무리 발뺌해 봐야 다 알아. 니가 뭘 하고 있는지, 간통죄로 구속돼서 석달 열흘 살고 나왔는지 다 알아, 니 아들 니 딸 반듯하게 살 거 같지만 반듯하게 살지 못하면 E! 내가 그거 다 알아..... 니가 간통죄로 살고 석

달 열흘 살고 나온 거 다 알아. W이도 알고 W이 누나도 알고 다 알아. 안산 시내 다 알아. 니 간통죄로 살고 나온 거는 다 알아..... W이 하고 너하고 사촌이라며? 어떡할 거야..... W이 잘 아냐? W이하고 나하고 둘도 없는 짝꿍인데....."라고 말한 사실, ②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E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라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09. 2. 11.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8고단5390),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수원지방법원 2009. 6. 4. 선고 2009노852 판결)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의 위 언사를 이 사건 명예훼손 불법행위의 청구원인 사실로 주장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위 언사는 원고가 아닌 E를 상대로 휴대전화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로 인해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위자료 청구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 및 선정자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상익

선 정 자 목 록

1. A (선정당사자)
2. C
3. D 끝.